



제429회국회(정기회)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 소관 법안심사자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의원 2208751, 임호선의의원 2208982, 백선희의원 2209818, 민형배의원 2209979,
김기현의원 2210875, 백혜련의원 2211541]

2025. 11.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의원안·임호선의원안·백선희의원안·민형배의원안·김기현의원안·백혜련의원안) ...	1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 심사 경과	2
□ 개정안의 비교	3
□ 개정안의 검토	4
가. 중앙대책본부장을 국무총리로 일원화(김기현의원안 제14조, 제60조②)	4
나. 재난 피해자 또는 유가족 지원을 위한 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 마련(김병기의원안·민형배의원안·김기현의원안·백혜련의원안 제14조의2③·④, 임호선의원안 제61조①·②, 백선희의원안 제14조의3)	7
다. 전문교육에 재난 피해자 지원 업무에 관한 사항 포함(백혜련의원안 제29조의2①)	21
라. 재난피해 회복수준 실태조사 근거 마련(김병기의원안·민형배의원안·김기현의원안·백혜련의원안 제58조의2)	25
마. 유가족전담공무원 운영 근거 신설(민형배의원안·백혜련의원안 제75조의5)	30
바. 부칙	33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의원안·임호선의원안·백선희의원안·민형배의원안·김기현의원안·백혜련의원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자 (의안번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김병기의원안 (2208751)	○ 중앙대책본부장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및 그 유족을 지원하기 위한 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고,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회복수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임호선의원안 (2208982)	○ 대통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재난을 특별재난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재난이 발생한 지역 및 해당 특별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특별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중앙대책본부장은 특별지원 신청 접수 등 특별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현장지원센터를 재난현장 또는 그 인근에 설치·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백선희의원안 (2209818)	○ 중앙대책본부장은 재난으로 인하여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그 유가족에 대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유가족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등에게 협력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민형배의원안 (2209979)	○ 유가족통합지원센터 설치, 유가족 전담공무원 제도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재난심리회복 지원의 체계적인 연구를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 피해자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기현의원안 (2210875)	○ 재난상황에서 각 부처를 통합·조정하고 지휘하기 위하여 중앙대책본부장을 국무총리로 일원화하는 한편, 법적 근거가 미비하였던 유가족지원센터와 피해회복 수준 등에 대한 실태조사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제도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백혜련의원안 (2211541)	○ 전문교육의 내용에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지원업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고 있는 유가족 통합지원센터 설치, 유가족전담공무원 지정 및 실태조사 실시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제도를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려는 것임.

□ 심사 경과

의안번호	제안자	제안일자	전체회의 상정	법안소위 심사
2208751	김병기의원	2025. 3. 10.	2025 7. 1.	-
2208982	임호선의원	2025. 3. 17.	2025 7. 1.	-
2209818	백선희의원	2025. 4. 15.	2025 7. 1.	-
2209979	민형배의원	2025. 4. 21.	2025 7. 1.	-
2210875	김기현의원	2025. 6. 17.	- (소위 직회부 : 2025. 8. 27.)	-
2211541	백혜련의원	2025. 7. 17.	- (소위 직회부 : 2025. 9. 17.)	-

□ 개정안의 비교

구 분	현행법	김병기의원안	임호선의원안	백선희의원안	민형배의원안	김기현의원안	백혜련의원안
중앙대책본부장 국무총리 일원화	행정안전부장관+ 일정한 경우 국무총리가 본부장 권한 행사	-	-	-	-	국무총리 본부장+ 행정안전부장관 차장	
지원센터 설치·운영	-	<신 설> 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	<신 설> 현장지원센터 설치·운영	<신 설> 유가족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	<신 설> 유가족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	<신 설> 유가족지원센터 설치·운영	<신 설> 유가족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
재난안전분야 전문교육	부령으로 정하는 정기·수시 교육	-	-	-	-	-	현행법 + 전문교육에 재 난 피해자 지원 사항 포함
재난 피해 회복수준 실태조사	-	<신 설> 재난의 효율적인 복구	-	-	<신 설> 정신적 피해자에 대한 지원	<신 설> 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 지원	<신 설> 재 난 피 해 자 의 심 리 회 복 지 원
유가족전담공무원	-	-	-	-	<신 설> 유가족전담공무원의 지원 사항과 정기적 교육 실시	-	<신 설> 유가족전담공무원의 지원 사항
부칙	-	공포 후 6개월	공포 후 6개월 +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특별재난부터 적용	공포 후 6개월	공포 후 6개월	공포 후 6개월 + 법 시행 이후 구성되는 중대본부부터 적용	공포 후 6개월

□ 개정안의 검토

가. 중앙대책본부장을 국무총리로 일원화(김기현의원안 제14조, 제60조②)

개 정 안	검토의견 등																				
□ 주요내용 ○ 현행법은 행정안전부에 중앙대책본부를 두면서, 중앙대책본부장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규정하고 있고, 재난의 효과적인 수습을 위하여 국무총리가 범정부적 차원의 통합 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행정안전부장관이 건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국무총리가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현행법에 따른 중앙대책본부장 권한]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th>중앙대책본부장</th></tr> </thead> <tbody> <tr> <td>원칙</td><td>행정안전부장관</td></tr> <tr> <td>해외재난 한정</td><td>외교부장관</td></tr> <tr> <td>방사능재난 한정</td><td>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장(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td></tr> <tr> <td>예외</td><td>국무총리</td></tr> </tbody> </table> ○ 개정안은 중앙대책본부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고, 중앙대책본부장을 국무총리로 일원화하려는 것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을 중앙대책본부 차장으로 규정하고 해외재난과 방사능재난의 경우에는 각각 외교부장관과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장을 차장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구 분	중앙대책본부장	원칙	행정안전부장관	해외재난 한정	외교부장관	방사능재난 한정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장(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예외	국무총리	□ 검토의견 ○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국무총리의 헌법상 지위를 고려할 때, 중앙대책본부장을 국무총리로 일원화하면 재난 상황에서 각 부처를 통합·조정할 수 있는 지휘 체계를 확립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취지는 긍정적 ○ 현행법이 중앙대책본부장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규정하고,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국무총리가 중앙대책본부장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은 재난의 규모나 심각성을 고려한 취지임. [국무총리가 중앙대책본부장 권한을 행사한 사례(4회)]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th>기 간</th></tr> </thead> <tbody> <tr> <td>코로나19</td><td>2020. 2. 23 ~ 2023. 5. 31. (1,194일)</td></tr> <tr> <td>10·29이태원참사</td><td>2022. 10. 30. ~ 2022. 12. 2. (34일)</td></tr> <tr> <td>의사 집단행동</td><td>2024. 2. 23. ~ 2025. 10. 20. (630일)</td></tr> <tr> <td>12·29여객기참사</td><td>2024. 12. 29. ~ 2025. 1. 19. (32일)</td></tr> </tbody> </table> ○ 재난의 규모나 심각성과 관계없이 모든 재난대응이 국무총리에게 집중되면 재난대응의 효율성·지속성에 한계가 있을 수 있으며, 현행과 같이 범정부적 통합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국무총리가 중앙대책본부장이 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임. □ 행정안전부 의견: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	구 분	기 간	코로나19	2020. 2. 23 ~ 2023. 5. 31. (1,194일)	10·29이태원참사	2022. 10. 30. ~ 2022. 12. 2. (34일)	의사 집단행동	2024. 2. 23. ~ 2025. 10. 20. (630일)	12·29여객기참사	2024. 12. 29. ~ 2025. 1. 19. (32일)
구 분	중앙대책본부장																				
원칙	행정안전부장관																				
해외재난 한정	외교부장관																				
방사능재난 한정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장(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예외	국무총리																				
구 분	기 간																				
코로나19	2020. 2. 23 ~ 2023. 5. 31. (1,194일)																				
10·29이태원참사	2022. 10. 30. ~ 2022. 12. 2. (34일)																				
의사 집단행동	2024. 2. 23. ~ 2025. 10. 20. (630일)																				
12·29여객기참사	2024. 12. 29. ~ 2025. 1. 19. (32일)																				

〈조문대비표〉

현행	김기현의원안	비고
제14조(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재난(이하 “대규모재난”이라 한다)의 대응·복구(이하 “수습”이라 한다)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u>행정안전부에</u>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본부”라 한다)를 둔다. ② (생략) ③ 중앙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중앙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u>행정안전부장관이</u> 되며, 중앙대책본부장은 중앙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u>다만, 해외재난의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이,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방사능재난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의 장이 각각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한다.</u>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재난의 효과적인 수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무총리가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외교부장관(해외재난의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방사능 재난의 경우에 한정한다)이	제14조(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 ① ----- ----- ----- -----<u>국무총리 소속으로</u>----- -----. ② (현행과 같음) ③ ----- -----<u>국무총리가</u>----- ----- -----<u>. <단서 삭제></u> ④ 중앙대책본부의 차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된다. 다만, 해외재난의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이,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방사능재난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의 장이 각각 중앙대책본부의 차장이 된다.	

현행	김기현의원안	비고
<u>차장이 된다.</u> 1. 국무총리가 범정부적 차원의 통합 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행정안전부장관이 국무총리에게 건의하거나 제15조의2 제3항에 따른 수습본부장의 요청을 받아 행정안전부장관이 국무총리에게 건의하는 경우 ⑤ ~ ⑦ (생략) 제60조(특별재난지역의 선포) ①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등 시급하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중앙대책본부장의 요청(제14조제4항에 따라 국무총리가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받아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중앙대책본부장은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③ ~ ⑤ (생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60조(특별재난지역의 선포) ① (현행과 같음) ② ----- ----- -----<u>요청을</u>----- ----- ----- ----- ----- -----. ③ ~ ⑤ (현행과 같음)	

나. 재난피해자 또는 유가족 지원을 위한 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 마련(김병기의원안·민형배의원안·김기현의원안·백혜련의원안 제14조의2③·④, 임호선의원안 제61조①·②, 백선희의원안 제14조의3)

개 정 안	검토의견 등
□ 주요내용 ○ 현행법은 지역대책본부(이하 “지대본”) 차원에서 재난현장의 총괄·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통합지원본부’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면서, 통합지원본부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각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각 지자체는 조례를 통해 지역대책본부 내에 ‘재난피해자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재난피해자 지원센터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재난피해자 및 유가족 지원 사항을 한 곳에서 안내·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 - 12·29여객기참사(2024.12.) 및 경북·경남·울산 초대형 산불(2025.3.)의 경우 중앙대책본부(이하 “중대본”) 차원에서 ‘중앙합동지원센터’라는 명칭으로 ‘재난피해자 지원센터’를 설치·운영(☞ 9-10페이지 참고) 하였는데, 이에 대한 법적 근거는 미비함 ○ 개정안은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중앙대책본부 차원에서 재난 피해를 통합 지원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재난피해자 또는 유가족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검토의견 ○ 중앙대책본부의 ‘중앙합동지원센터’ 설치·운영에 대한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여, 재난 피해자 및 유가족체계를 명확히하려는 개정안의 취지가 타당 ○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검토할 필요 ① 지원센터의 명칭 : 최근 중대본 차원에서 두 차례 운영했던 재난 피해자 지원센터의 명칭이 ‘중앙합동지원센터’ 였다는 점, 지대본 내 설치·운영되는 재난피해자 지원기구 명칭이 ‘재난피해자 지원센터’라는 점을 고려하여 재난피해자 지원기구 명칭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중앙합동재난피해자 지원센터’의 명칭으로 수정 필요 ②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요건 : 중앙대책본부 차원에서 재난피해자에 대한 통합적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지원실시기관 등이 참여하는 형태 임을 명시할 필요 「재난안전법 시행령」 제13조(대규모 재난의 범위) 법 제1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재난”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을 말한다. 1. 재난 중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정도가 매우 크거나 재난의 영향이 사회적 ·

개 정 안							검토의견 등	
[개정안의 비교]							경제적으로 광범위하여 주무부처의 장 또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재난 안전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의 건의를 받아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중앙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재난 2. 제1호에 따른 재난에 준하는 것으로서 중앙대책본부장이 재난관리를 위하여 중앙대책본부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재난	
구분	김병기	임호선	백선희	민형배	백해련	김기현		
명칭	통합지원센터	현장지원센터	유가족통합지원센터			유가족지원센터		
설치요건	재난 발생	재난으로 사망자 발생						
지원대상	재난 피해자 & 사망자 유족	특별재난 피해자	사망자 유가족					
지원범위	수습상황 전달 신원확인 비상물품전달 등	특별지원 신청 접수 등	지원사항 안내 신원확인 장례절차 지원 수습 정보 제공 심리 상담 등	신원확인 비상물품전달 등	신원확인 비상물품전달 등	심리적· 법률적· 행정적 지원	③ 지원 대상 : 재난현장에서의 지원은 사망자의 유가족뿐만 아니라 신체적·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모두 포괄해야 한다는 점,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지 않은 재난의 경우에도 통합된 지원체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 김병기의원안을 중심으로 ‘피해자와 그 가족’을 지원 대상으로 구체화	
[재난피해자 지원기구 체계]							④ 지원 범위 : 재난 발생의 유형과 규모, 피해의 정도에 따라 필요한 지원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설치·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령에서 규정할 필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합동지원센터 <중앙대책본부 구성 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통합지원본부 재난피해자지원센터 <지역대책본부 구성 시>	
							⑤ 센터 운영 : 재난의 효율적인 수습을 위하여 중앙대책본부장이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지원실시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을 파견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추가할 필요	
							□ 행정안전부 의견: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	

<참고 : 중앙합동지원센터>

○ (기능) 중앙부처 차원에서 유·가족 대상 피해지원 전담기구(수습정보 제공, 요구사항 접수·처리 등)

■ 재난피해자 지원을 한 곳에서 통합 안내·접수하여 신속한 피해자 회복 도움 강화

< 기 존 >

- ▶ 피해자가 직접 다수의 해당 기관에 연락·방문하여 피해지원 요청(신청)
- ▶ 재난 수습을 위한 피해지원체계 미비
- ▶ 피해자 지원 전담 기구 부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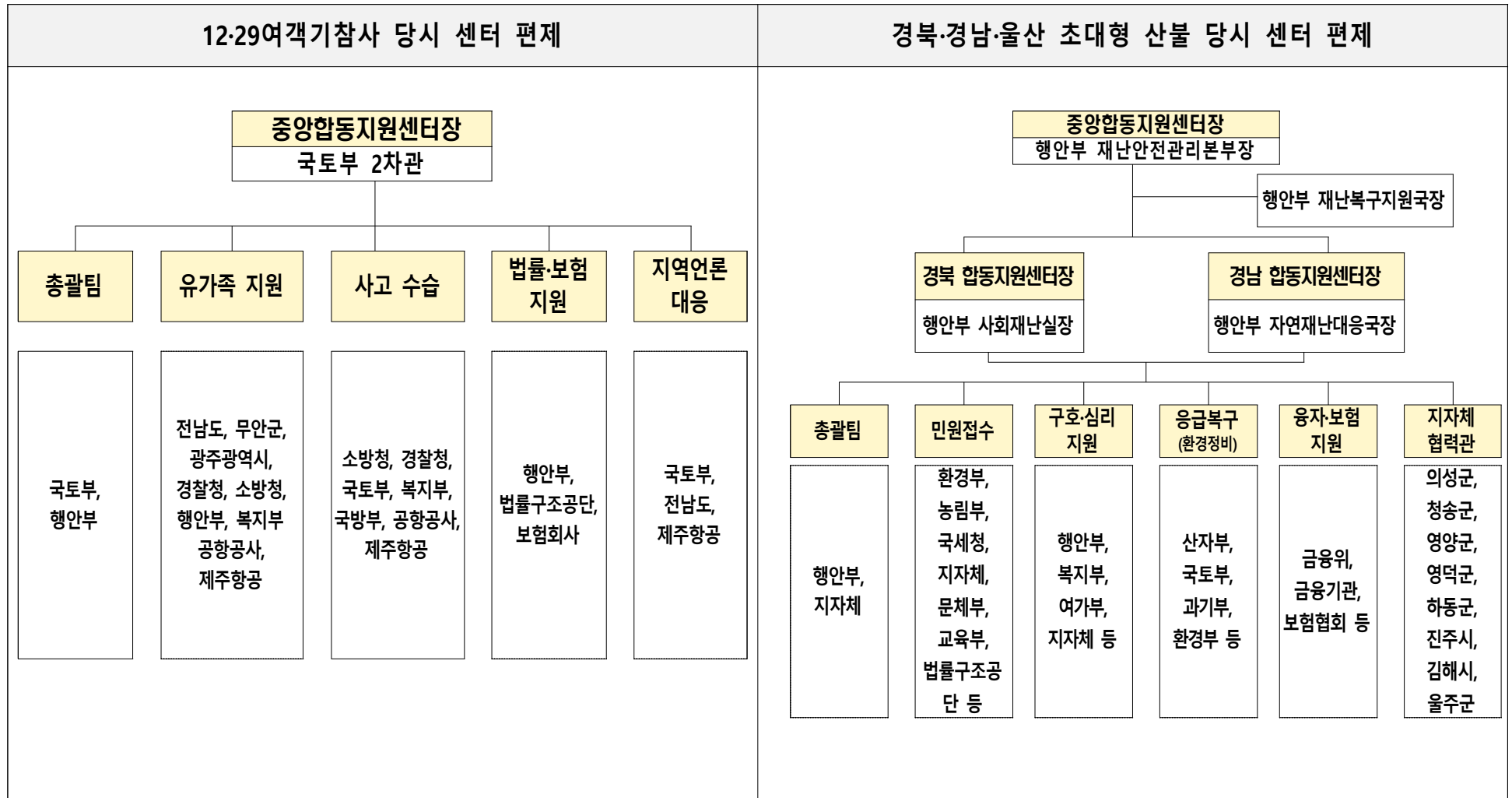


< 개 선 >

- ▶ 소관기관이 재난현장 한 곳에 모여 피해자에게 지원 사항 통합 안내·접수
- ▶ 재난유형별 맞춤형 서비스 전달체계 마련
- ▶ 통합지원센터에서 피해자 지원 전담

○ (운영사례) 관계기관 합동으로 법률, 금융, 세무 등 재난피해자 및 유가족 지원사항을 한 곳에서 안내·처리하는 ‘중앙합동지원센터’ 시범운영(2회)

연 표 번	재난명(운영기간)	피해 규모	참여기관	주요 실적
1	12·29여객기참사 (‘24.12.29.~’25.1.19.)	181명 (사망 179, 부상 2)	36개 기관 (국토부, 국가트라우마센터, 제주항공, 손해보험협회 등)	현장 조치 민원 1,263건 (사고수습 164, 유가족지원 504, 법률보험세금 563, 언론대응 32)
2	경남·울산 대형산불 (‘25.3.22.~4.30.)	16명(사망 4, 부상 12) 산림피해 4,685천 ha	33개 기관 (산림청, 한전, 법률구조공단, 한국농어촌공사, 금융위 등)	현장 조치 민원 377건 (이재민구호 4, 시설주거 32, 영농 246, 지원금 8, 용자보험법률 336, 기타 54)
	경북 대형산불 (‘25.3.27.~5.18.)	51명(사망 27, 부상 24) 산림피해 99천 ha	42개 기관 (환경부, 국세청, 한국가스공사, 중소벤처기업부, 한전 등)	현장 조치 민원 4,576건 (이재민구호 470, 시설주거 1,932, 영농 71, 지원금 428, 용자보험법률 679, 기타 996)



〈조문 대비표〉

현 행	김병기 의원안	임호선 의원안	백선희 의원안	민형배 의원안	김기현 의원안	백혜련 의원안	수정의견	비고
제14조의2(수습지 원단 파견 등) ①·② (생 략) <신 설>	제14조의2(수습지 원단 파견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중앙대책 본부장은 재 난수습 상황 전달, 사망자 · 부상자· 실 종자 신원 확 인 및 비상 물품 전달 등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및 그 유족을 지원하 기 위하여 재난 현장에 통합	제 14 조 의 2(수습지원단 파 견 등) ①·② (현 행과 같음)	제14조의2(수습지 원단 파견 등) ① · ② (현행과 같 음)	제14조의2(수습지 원단 파견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중앙대책 본부장은 재 난으로 인하 여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사 망자 신원 확인, 비상물품 전달 등 그 유가족을 지원 하기 위하여 재난현장에 유 가족통합지원센 터를 둘 수 있다. 이 경	제14조의2(수습지 원단 파견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중앙대책 본부장은 재 난으로 인하여 사망자가 발생 한 경우 그 유가족에 대한 심리 적·법률 적·행정적 지 원을 위하여 재 난 현 장 에 유가족지원센터 를 둘 수 있다.	제14조의2(수습지 원단 파견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중앙대 책 본 부 장 은 재난으로 인 하여 사망자 가 발생한 경 우 사망자 신원 확인 비상물품 전 달 등 그 유 가족을 지원 하기 위하여 재 난 현 장 에 유가족통합지 원센터를 둘	제14조의2(수습지 원단 파견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중앙대책 본부장은 대 규모 재난으로 인한 ~~피해자~~ 와 그 가족을 지 원하기 위하여 관계 재난관리 책임기관 및 지 원실시기관 등 이 참여하는 중앙합동재난피 해지원 센터 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수정의견> • 센터 명칭 수정 필요 • 재난 규모를 고려한 설 치·운영 요 건 및 참여 범위 구체화 • 피해자와 그 가족으로 지 원 범위 구 체화 • 지원 범위 → 제14조의 2제4항의 위 임에 따라 시행령에서

현행	김병기 의원안	임호선 의원안	백선희 의원안	민형배 의원안	김기현 의원안	백혜련 의원안	수정의견	비고
	<u>지원센터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u>			<u>우 제75조의 5에 따른 유 가족 전담 공 무원을 두는 때에는 유가 족 전담 공무원 을 포함하여 구 성하여야 한다.</u>		<u>수 있다.</u>		구체화
③ 수습지원 단의 구성과 운영 및 특 수기동구조 대의 편성과 파견 등에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④ ----- ----- <u>운영, 특수기 동구조대의 편 성과 파견 및 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u> ----- -----	③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 ----- <u>운영, 특수기 동구조대의 편 성과 파견 및 유가족 통합 지원센터 구 성·운영</u> -----	④ ----- ----- <u>운영, 특수기 동구조대의 편성·파견 및 유가족지 원센터 설치 · 운영</u> -----	④ ----- ----- <u>운영, 특수 기동구조대의 편성과 파견 및 유가족 통합지원센 터 구성· 운영</u> -----	④ ----- ----- <u>운영, 특수 기동구조대의 편성과 파견 및 중앙합 동재난피해 자지원센터 설치·운영</u> -----	
<신설>				<u>제14조의3(유가</u>				

현 행	김병기 의원안	임호선 의원안	백선희 의원안	민형배 의원안	김기현 의원안	백혜련 의원안	수정의견	비고
			족 통 합 지 원 센터 설치 등) ① 중앙 대 책 본 부 장 은 재 난 으 로 인 하 여 사 망 자 가 발 생 한 경 우 그 유 가 족 에 대 한 신 속 하 고 체 계 적 인 지 원 을 위 하 여 유 가 족 통 합 지 원 센 터 (이 하 이 조 에 서 “센 터”라 한 다)를 설 치 · 운 영 할 수 있 다. ② 센 터 는					

현 행	김병기 의원안	임호선 의원안	백선희 의원안	민형배 의원안	김기현 의원안	백혜련 의원안	수정의견	비고
			<u>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u> <u>1. 지원사항 안내 및 지원금 신청 등 행정처리 지원</u> <u>2. 사망자 신원확인 및 장례 절차 지원</u> <u>3. 재난 상황 및 수습 과정에 대한 정보 제공</u> <u>4. 심리상담 등 심리적 안정을 위한 지원</u> <u>5. 그 밖에</u>					

현 행	김병기 의원안	임호선 의원안	백선희 의원안	민형배 의원안	김기현 의원안	백혜련 의원안	수정의견	비고
			<u>대통령령으</u> <u>로 정하는</u> <u>유가족 지</u> <u>원에 필요</u> <u>한 사항</u> <u>③ 중앙대책</u> <u>본부장은 센</u> <u>터의 설치·</u> <u>운영을 위하</u> <u>여 필요한</u> <u>경우에는 관</u> <u>계 재난관리</u> <u>책임기관의</u> <u>장 및 민간</u> <u>기관·단체</u> <u>의 장에게</u> <u>협력을 요청</u> <u>할 수 있다.</u> <u>④ 제1항부</u> <u>터 제3항까</u>					

현행	김병기 의원안	임호선 의원안	백선희 의원안	민형배 의원안	김기현 의원안	백혜련 의원안	수정의견	비고
제15조(중앙대책 본부장의 권한 등) ① ~ ③(생략) ④ 중앙대책본 부장(중략)은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역대책 본부장이 요청 하는 경우 또는 재난을 효율적 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u>지에 따른</u> <u>센터의 설치</u> <u>· 운영 등에</u> <u>필요한 사항</u> <u>은 대통령령</u> <u>으로 정한다.</u>				제15조(중앙대책 본부장의 권한 등) ① ~ ③(생략) ④ 중앙대책본 부장(중략)은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역대책 본부장이 요청 하는 경우 또는 재난을 효율적 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재난관리책임기	<수정의견>

현행	김병기 의원안	임호선 의원안	백선희 의원안	민형배 의원안	김기현 의원안	백혜련 의원안	수정의견	비고
경우에는 관계 재난관리책임기 관의 장 및 재 난 피해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 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하 “지원실시기 관”이라 한다) 의 장에게 소속 직원을 제16조 제2항에 따른 지 역대책본부에 파 견하도록 요청 할 수 있다. 제61조(특별재 난지역에 대한 지원) 국	제61조(특별재난 지역에 대한 지원)(현행과 같	제61조(특별재 난지역에 대한 지원)	제61조(특별재난 지역에 대한 지원)(현행과 같	제61조(특별재난 지역에 대한 지원)(현행과 같	제61조(특별재난 지역에 대한 지원)(현행과 같	제61조(특별재난 지역에 대한 지원)(현행과 같	관의 장 및 재 난 피해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 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하 “지원실시기 관”이라 한다) 의 장에게 소속 직원을 제14조 제2 제3항에 따른 중앙합동 재난피해자지 원센터와 제16 조제2항에 따른 지역대책본부에 파견하도록 요 청할 수 있다.	• 소속 직원을 파견을 요청 할 수 있는 권한을 추가

현 행	김병기 의원안	임호선 의원안	백선희 의원안	민형배 의원안	김기현 의원안	백혜련 의원안	수정의견	비고
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 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하여는 제 66조제3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급대책 및 재난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상·재정상·금융상·의료상의 특별지	음)	① ----- ----- ----- <u>선포된 특별</u> <u>재난이 발생</u> <u>한 지역 및</u> <u>해당 특별재</u> <u>난으로 피해</u> <u>를 입은 자에</u> ----- ----- ----- ----- ----- ----- ----- ----- ----- -----	음)	음)	음)	음)		

현행	김병기 의원안	임호선 의원안	백선희 의원안	민형배 의원안	김기현 의원안	백혜련 의원안	수정의견	비고
원을 할 수 있다. <신설>		----- --. ② 중앙대책 본부장은 제 1항에 따른 특별지원 신 청 접수 등 특별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 하여 대통령 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 라 관계 중 앙 행정 기관 및 지방자치 단체 소속의 전문 인력으 로 구성된 현장지원센						

현행	김병기 의원안	임호선 의원안	백선희 의원안	민형배 의원안	김기현 의원안	백혜련 의원안	수정의견	비고
		<u>터를 재난현 장 또는 그 인근에 설치 · 운영하여야 한다.</u>						

다. 전문교육에 재난 피해자 지원 업무에 관한 사항 포함 (백혜련의원안 제29조의2①)

개 정 안	검토의견 등												
□ 주요내용 ○ 현행법은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직원의 정기적·수시적 전문교육 이수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전문교육의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규칙과 행정안전부고시를 통해 규정하고 있음. <table><tr><th>구 분</th><th>관리자 전문교육</th><th>실무자 전문교육</th></tr><tr><td>교육 대상자 (시행규칙 제6조의2①)</td><td>1)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 부서장 2) 각 자치단체 부단체장 3) 안전책임관</td><td>관리자에 해당하지 않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 부서의 공무원 또는 직원</td></tr><tr><td>교육 시기</td><td colspan="2">업무를 맡은지 6개월 이내 신규교육 이수 신규교육을 받은 후 매 2년 마다 정기교육 이수</td></tr><tr><td>교육 이수 시간</td><td>7시간 이상</td><td>14시간 이상</td></tr></table> ○ 개정안은 전문교육의 범위에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지원업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법률에서 규정하려는 것임.	구 분	관리자 전문교육	실무자 전문교육	교육 대상자 (시행규칙 제6조의2①)	1)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 부서장 2) 각 자치단체 부단체장 3) 안전책임관	관리자에 해당하지 않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 부서의 공무원 또는 직원	교육 시기	업무를 맡은지 6개월 이내 신규교육 이수 신규교육을 받은 후 매 2년 마다 정기교육 이수		교육 이수 시간	7시간 이상	14시간 이상	□ 검토의견 ○ 재난안전분야 종사자의 재난 피해자에 대한 지원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제고하여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취지는 긍정적 ○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 - 재난안전분야는 재난 피해자 지원 업무뿐만 아니라 재난 예방·대응·복구 과정의 절차별·재난특성별·전문분야별로 다양한 업무로 구성되어 있어, 현행법령은 전문교육 실시에 관한 일반적인 원칙만을 규정하고, 구체적인 교육 대상 및 내용은 관련 개별법에서 규정되어야 할 사항으로 보는 것이 타당 - 이에 따라, 재난 피해자 지원과 관련된 구호 업무에 관한 교육은 「재해구호법」 및 동 법 시행령에서 규율하고 있음 「재해구호법」 제16조의3(재해구호 전문인력의 양성) ① (생략) ②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도지사등은 제1항에 따른 재해구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2.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 3. 그 밖에 구호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 ③~④ (생략)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9조의3(전문인력 양성기관의 교육훈련 내용) 법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해구호 절차 및 체계의 이해 2. 구호 물자 및 장비의 사용법 등 구호 활동 실무 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재해구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구 분	관리자 전문교육	실무자 전문교육											
교육 대상자 (시행규칙 제6조의2①)	1)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 부서장 2) 각 자치단체 부단체장 3) 안전책임관	관리자에 해당하지 않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 부서의 공무원 또는 직원											
교육 시기	업무를 맡은지 6개월 이내 신규교육 이수 신규교육을 받은 후 매 2년 마다 정기교육 이수												
교육 이수 시간	7시간 이상	14시간 이상											

개 정 안	검토의견 등
	○ 개정안의 취지를 반영하여, 「재해구호법」 시행령에서 재난 피해자 지원 업무 종사자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해당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재난 피해자 지원 업무 관련 전문교육을 의무화 하는 내용의 부대의견 채택을 고려할 필요 - 참고로, 현재 10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재해구호 관련 전문교육 실시 중이며, 이 중 대한적십자사 등 4개기관에서 피해자 지원 관련 교육 실시(☞ 23페이지 참고) 부대의견(안) ○ 행정안전부는 재난 피해자 지원 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교육훈련 내용에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지원업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재해구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 행정안전부 의견: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

<참고 : 2025년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기관 교육운영 현황>

기관	교육과정	교육기간
10개 기관	30개 과정	
대한적십자사 * 재난피해자 지원 교육 포함	1. 재해구호 기본과정	1일
	2. 재해구호 전문과정	3일
	3. 심리사회적지지 일반과정	1일
전국재해구호협회	1. 재해구호 기본과정	1일
	2. 재해구호 전문과정	3일
한국방재협회 * 재난피해자 지원 교육 포함	1. 재해구호 실무자 기본과정	1일
	2. 재해구호 실무자 전문과정	3일
	3. 재해구호 관리자 기본과정	1일
	4. 재해구호 관리자 전문과정	3일
한국산업관계연구원 * 재난피해자 지원 교육 포함	1. 재해구호 기본과정	1일
	2. 재해구호 전문과정	3일
	3. 재해구호 보수 과정	1일
경일대학교	1. 재해구호 기본과정	1일
	2. 기본과정(블렌디드)	1일
	3. 재해구호 전문과정	3일
	4. 재해구호 보수과정	1일
경운대학교 * 재난피해자 지원 교육 포함	1. 재해구호 기본과정	1일
	2. 재해구호 전문과정	3일
우석대학교	1. 재해구호 실무자과정	1일
	2. 재해구호 관리자과정	2일
	3. 재해구호 자원봉사자과정	1일
	4. 재난심리회복 전문과정	3일
수원대학교	1. 재해구호 기본과정	1일
	2. 재해구호 전문과정	3일
	3. 재해구호 보수과정	1일
포항대학교	1. 재해구호 기본과정	1일
	2. 재해구호 전문과정	3일
	3. 재해구호 보수과정	1일
목포해양대학교	1. 재해구호 기본과정	1일
	2. 재해구호 전문과정	3일

<조문대비표>

현행	백혜련의원안	비고
제29조의2(재난안전분야 종사자 교육) ① 재난관리 책임기관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직원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전문교육(이하 “전문교육”이라 한다)을 행정안전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또는 수 시로 받아야 한다. <후단 신설>	제29조의2(재난안전분야 종사자 교육) ① ----- ----- ----- ----- ------. 이 경우 전 문교육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지원 업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라. 재난피해 회복수준 실태조사 근거 마련(김병기의원안·민형배의원안·김기현의원안·백혜련의원안 제58조의2)

개 정 안

□ 주요내용

○ 현행법은 별도의 재난피해 회복수준 실태조사와 관련된 근거를 두고 있지 않으나,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서는 2020년부터 “재난피해 회복수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조사연도	조사참여자	조사기간	비고
2024년	직접 피해자 3,016명 재난심리지원 이용자 600명	8.6. ~ 11.4.(91일)	심리지원 만족도 조사 수행 집중호우로 기간 연장
2023년	직접 피해자 3,009명	6.19. ~ 8.11.(54일)	-
2022년	직접 피해자 3,016명	8.8 ~ 9.16.(40일)	-
2021년	직접 피해자 3,010명, 소상공인(코로나19) 502명	8.20. ~ 10.4.(46일)	코로나19 아수대응을 위해 소상공인 조사
2020년	직접 피해자 2,632명 간접 피해자 1,069명	9.23. ~ 11.6.(45일)	간접피해자(미피해 재난경험자)를 포함

○ 개정안은 재난 피해 실태 및 피해회복 수준에 대한 실태조사의 근거를 법률에서 규정하려는 것임.

구 분	김병기의원안	민형배의원안	김기현의원안	백혜련의원안
조사목적	효율적 재난복구	정신적 피해 지원	피해자 심리적 안정 사회적응 지원	피해자 심리회복 지원
조사시기	매년	-	-	매년
실시 여부	재량 실시	재량 실시	재량 실시	의무 실시

검토의견 등

□ 검토의견

○ 현재 시행 중인 재난피해 회복수준 실태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조사목적을 구체화하고 조사 대상·방법·절차 등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하여 제도의 기반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

○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검토할 필요

① ‘조사 목적’ : 정신적 피해에 대한 지원 뿐만 아니라 재난의 복구와 관련된 다양한 지원 사항을 개선하는 데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각 개정안의 조사 목적을 포괄하도록 ‘재난의 효율적인 복구와 피해자 지원’으로 자구 수정 필요

② ‘자료의 요구 및 제출’ :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태조사 관련 입법례를 참조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도록 하는 규정 신설 필요

「노인복지법」 제5조(노인실태조사)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의 보건 및 복지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업무의 위임’ : 현재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서 재난피해 회복수준 실태조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명확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점을 고려하여 업무의 위임 규정 신설 필요

□ 행정안전부 의견: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

<참고 : 재난피해 회복수준 실태조사 대상 주요 재난 현황>

구 분	재난명	재난연도	발생일자	조사연도					
				'20	'21	'22	'23	'24	'25
1	11.26.~28. 대설·강풍·풍랑	2024	11.26.~11.28.						0
2	9.19.~21. 호우		9.19.~9.21.						0
3	7.8.~19. 호우		7.8.~7.19.						0
4	8.9.~11. 제6호 태풍 카눈	2023	8.9.~8.11.					0	0
5	6.27.~27. 호우 피해		6.27.~7.27.					0	0
6	'23년 4월 산불		4.2.~4.4. / 4.11.					0	0
7	태풍 힌남노	2022	9.5~9.6				0	0	0
8	8.8~17 집중호우		8.8~8.17				0	0	0
9	경북, 강원 동해안 산불		3.4~3.13			0	0	0	0
10	제12호 태풍 오마이스	2021	8.23.~8.24.			0	0	0	
11	7월 집중호우		7.5~7.8.			0	0	0	
12	태풍 마이삭 및 하이선	2020	9.2~9.3, 9.7~9.8		0	0	0		
13	8월 한반도 집중호우		7.28~8.11		0	0	0		
14	제18호 태풍 미탁	2019	10.2.~10.3.	0	0	0			
15	제13호 태풍 링링		9.6.~9.7.	0	0	0			
16	강원 동해안 일원 산불		4.4.~4.5.	0	0	0			
17	제25호 태풍 콩레이	2018	10.4.~10.7.	0	0				
18	제19호 태풍 솔릭 및 호우		8.22.~9.1.	0	0				
19	제7호 태풍 뿌라뻬룬 및 호우		6.26.~7.4.	0	0				
20	11.15 (포항)지진	2017	11.15.	0					
21	7월 호우피해		7.2~11., 7.14~16	0					
22	코로나19	2019	-		0				

<조문대비표>

현 행	김병기의원안	민형배의원안	김기현의원안	백혜련의원안	수정의견	비 고
<신 설>	제58조의2(실태조사)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의 효율적인 복구를 위하여 매년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회복 수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8조의2(실태조사)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피해의 회복수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8조의2(실태조사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피해의 회복수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8조의2(실태조사)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심리회복 지원을 위하여 피해 실태 및 회복수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제58조의2(실태조사)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의 효율적인 복구 및 피해자 지원 을 위하여 재난피해 회복 수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할 수 있다.	<수정의견> • 각 개정안을 포괄하여 조사 목적을 효율적인 복구 및 피해자 지원으로 규정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심리회복 지원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대통	<수정의견> • 자료의 요구 및 제출 규정 신설

현행	김병기의원안	민형배의원안	김기현의원안	백혜련의원안	수정의견	비고
<신설> 제7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생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현행과 같음)	• 각 개정안의 위임 규정 유지

현행	김병기의원안	민형배의원안	김기현의원안	백혜련의원안	수정의견	비고
락)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66조의10에 따른 안전지수의 개발·조사 및 안전진단의 실시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연구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④(생략)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8조의2에 따른 재난피해 회복수준 실태조사 등에 관한 권한의 일부, 제66조의10에 따른 안전지수의 개발·조사 및 안전진단의 실시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연구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④ (현행과 같음)	<수정의견> • 업무의 위임 근거 마련

마. 유가족전담공무원 운영 근거 신설(민형배의원안·백혜련의원안 제75조의5)

개 정 안			검토의견 등															
□ 주요내용 ○ 개정안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의 장(민형배의원안)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백혜련의원안)이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인하여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그 유가족에게 각종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담당 직원(유가족전담공무원)을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검토의견 ○ 유가족의 심리적 응급처치, 지원사항 및 장례 절차 안내 등 유가족의 생활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긍정적 ○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검토할 필요 ① ‘유가족전담공무원 운영 방식’: 기존 공무원 인력 중 지정 운영 방식과 별도의 전담 인력을 충원하여 두는 방식으로 나누어 검토할 필요 - (기존 인력 지정) 현행법 상 중앙대책본부장·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등에게 소속 직원의 지역대책본부 파견을 요청할 수 있어 필요 시 해당 규정을 통해 유가족에 대한 지원 업무 전담 수행 공무원 배치 가능 - (별도 전담 인력 충원) 재난의 발생 시기와 빈도, 규모 등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효율적인 인력 활용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 ② ‘유가족전담공무원 행동매뉴얼 마련’: 현행법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작성하는 위기관리 표준매뉴얼과 재해구호계획 수립지침 등에 이미 유가족 1:1 전담 지원 업무 등에 대해 기술하고 있음을 고려할 필요															
<table><tr><th>구 분</th><th>민형배의원안</th><th>백혜련의원안</th></tr><tr><td>운영주체</td><td>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td><td>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td></tr><tr><td>운영요건</td><td colspan="2">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인하여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td></tr><tr><td>지원사항</td><td colspan="2">1. 심리적 응급 처치에 관한 사항 2. 지원사항 안내 및 지원금 신청 등의 행정처리에 관한 사항 3. 장례 절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유가족의 정상적 생활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td></tr><tr><td>기타 규정</td><td>유가족전담공무원 행동매뉴얼 마련 정기적 교육 실시</td><td>-</td></tr></table>			구 분	민형배의원안	백혜련의원안	운영주체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운영요건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인하여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지원사항	1. 심리적 응급 처치에 관한 사항 2. 지원사항 안내 및 지원금 신청 등의 행정처리에 관한 사항 3. 장례 절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유가족의 정상적 생활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기타 규정	유가족전담공무원 행동매뉴얼 마련 정기적 교육 실시	-	
구 분	민형배의원안	백혜련의원안																
운영주체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운영요건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인하여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지원사항	1. 심리적 응급 처치에 관한 사항 2. 지원사항 안내 및 지원금 신청 등의 행정처리에 관한 사항 3. 장례 절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유가족의 정상적 생활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기타 규정	유가족전담공무원 행동매뉴얼 마련 정기적 교육 실시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5(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운용)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재난유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위기관리 매뉴얼을 작성·운용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난대응활동계획과 위기관리 매뉴얼이 서로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한 재난에 대하여 재난관리체계와 관계 기관의 임무와 역할을 규정한 문서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의 작성 기준이 되며,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작성한다. 다만, 다수의 재난관리주관기관이 관련되는 재난에 대해서는 관계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작성할 수 있다. 2.-3. (생략)																		

<참고 : 현행 유가족전담공무원 운영 관련>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안)	2025 재해구호계획 수립지침						
○ ‘통합지원본부의 주요 임무’ 내용 중 대민지원반(장례지원반)에 반영 <table><tr><th>구 분</th><th>실무반</th><th>주요 임무</th></tr><tr><td>대민지원</td><td>장례지원반</td><td> • 사망자 인적사항 파악 • 장례식장 전담인력 배치 • 유가족 1:1전담 지원 업무 • (필요시) 분향소 설치 운영 • 지대본 생활안정지원반에 상황보고 </td></tr></table> ○ ‘대응 및 수습 주요 기능’ 중 ‘피해자 가족지원’ 내용으로 전담공무원 지정·운영토록 명시 • (복지정책과) 유가족과의 1:1 전담공무원 지정·운영 ○ ‘부서별 협업기능’ 중 긴급생활안정지원(장례지원)에 전담인력 배치 ② 긴급생활안정지원 [②-2] 장례지원 [②-2-1] 사망자 현황파악 [②-2-2] 장례식장 전담인력 배치 및 유가족 지원	구 분	실무반	주요 임무	대민지원	장례지원반	• 사망자 인적사항 파악 • 장례식장 전담인력 배치 • 유가족 1:1전담 지원 업무 • (필요시) 분향소 설치 운영 • 지대본 생활안정지원반에 상황보고	장례지원 (지방자치단체) ■ 지원개요 장례식장에 공무원 전담배치 등을 통해 유가족 장례시설 · 장비 이용 편의지원 및 1:1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 ■ 지원내용 장례지원반 설치 · 운영 예우를 갖춘 신원확인 및 장례절차 상담 등을 위하여 관계기관 간 체계적 협력체인 “장례지원반”을 설치 · 운영 장례식장 · 화장장 확보 시신 수습, 유족의 장례식장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여 유족 · 장례식장 간 연락체계 구축 재난발생 시 재난 피해자 인원을 고려하여 인근 수용 가능 장례식장 · 화장장 안내 · 예약 등 신속한 장례서비스 지원 장의차량 이송지원 상조회 협조를 통해 냉장설비가 갖추어진 장의차량 확보 · 지원 ※ 유가족 편의 지원, 일대일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 등 유가족 지원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재난대응 · 수습 가이드라인”을 참고 수범사례 ☞ (제천시) 제천 복합건물 화재 발생 즉시, 사망자 유가족 1:1 담당공무원 지정 · 안내 등(29명), 유족조서 작성 지원 등 검사지휘 요건 신속 진행, 장례절차 안내 등 ☞ (밀양시) 밀양 세종병원 화재 발생 즉시, 사망자 유가족 보호를 위하여 1:1 전담공무원 배치, 유가족 면담, 심리지원 등
구 분	실무반	주요 임무					
대민지원	장례지원반	• 사망자 인적사항 파악 • 장례식장 전담인력 배치 • 유가족 1:1전담 지원 업무 • (필요시) 분향소 설치 운영 • 지대본 생활안정지원반에 상황보고					

<조문대비표>

현행	민형배의원안	백혜련의원안	비고
<신설>	<u>제75조의5(유가족전담공무원)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인하여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그 유가족에게 각종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담당직원(이하 이 조에서 “유가족전담공무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u> <u>② 유가족전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한다.</u> <u>1. 심리적 응급 처치에 관한 사항</u> <u>2. 지원사항 안내 및 지원금 신청 등의 행정 처리에 관한 사항</u> <u>3. 장례 절차에 관한 사항</u> <u>4. 그 밖에 유가족의 정상적 생활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u> <u>③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각 호의 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가족전담공무원의 행동매뉴얼을 마련하고 매년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u>	<u>제75조의5(유가족전담공무원)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인하여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그 유가족에게 각종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담당직원(이하 이 조에서 “유가족전담공무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u> <u>② 유가족전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한다.</u> <u>1. 심리적 응급 처치에 관한 사항</u> <u>2. 지원사항 안내 및 지원금 신청 등의 행정 처리에 관한 사항</u> <u>3. 장례 절차에 관한 사항</u> <u>4. 그 밖에 유가족의 정상적 생활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u>	

바. 부칙

개 정 안			검토의견 등
□ 주요내용			□ 검토의견 ○ 부칙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검토할 필요 ① ‘시행일’과 관련하여 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등을 시행령에서 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각 개정안의 취지 타당 ② ‘적용례’는 과거부터 신법 시행 당시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사안 중 어느 시점이나 단계부터 신법을 적용할 것인지 문제되는 경우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두는 규정으로, - (지원센터 설치·운영 관련) 재난은 특정 시점에 발생한다는 점에서 법 시행일 전후 발생 여부가 명확히 구분되므로 별도의 적용례를 두지 않는 것이 타당 - (중앙대책본부장 권한 일원화 관련 조문을 개정안에 반영하는 경우) 중앙대책본부는 재난의 대응기간 동안 가동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법 시행일 당시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적용례를 두는 것이 타당 □ 행정안전부 의견: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
구 분	김병기·임호선·백선희·민형배·김기현·백혜련의원안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구 분	임호선의원안	김기현의원안	
적용례	(지원센터 설치·운영 관련)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재난부터 적용	(중앙대책본부장 일원화 관련) 법 시행 이후 중앙대책본부를 두는 경우부터 적용	

<조문대비표>

김병기의원안	임호선의원안	백선희의원안	민형배의원안	김기현의원안	백혜련의원안	수정의견	비고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별재난 선포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재난부터 적용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두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u>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u> 제2조(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관한 적용례) (<u>김기현의원안</u>)	<수정의견> • 각 개정안의 시행일 반영 <수정의견> • 김기현의원안 제14조를 대안에 반영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칙 규정 필요

